

『대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』 연혁

기준시점	지역	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	최우선변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
1990.02.19 ~ 1995.02.28	대구직할시	2,000만원 이하	700만원
1995.03.01 ~ 1995.10.18	대구광역시	2,000만원 이하	700만원
	달성군 1)	1,500만원 이하	500만원
1995.10.19 ~ 2001.09.14	대구광역시	3,000만원 이하	1,200만원
	달성군	2,000만원 이하	800만원
2001.09.15 ~ 2008.08.20	대구광역시	3,500만원 이하	1,400만원
	달성군	3,000만원 이하	1,200만원
2008.08.21 ~ 2010.07.25	대구광역시	5,000만원 이하	1,700만원
	달성군	4,000만원 이하	1,400만원
2010.07.26 ~ 2013.12.31	대구광역시	5,500만원 이하	1,900만원
	달성군	4,000만원 이하	1,400만원
2014.01.01 ~ 2016.03.30	대구광역시	6,000만원 이하	2,000만원
	달성군	4,500만원 이하	1,500만원
2016.03.31 ~ 2018.09.17	대구광역시	6,000만원 이하	2,000만원
	달성군	5,000만원 이하	1,700만원
2018.09.18 ~ 2021.05.10	대구광역시	6,000만원 이하	2,000만원
	달성군	5,000만원 이하	1,700만원
2021.05.11 ~ 2023.02.20	대구광역시	7,000만원 이하	2,300만원
	달성군	6,000만원 이하	2,000만원
2023.02.21 ~ 2023.06.30	대구광역시	8,500만원 이하	2,800만원
	달성군	7,500만원 이하	2,500만원
2023.07.01 ~ 현재	대구광역시	8,500만원 이하	2,800만원
	달성군, 군위군 2)	7,500만원 이하	2,500만원

1) 1995. 3. 1.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

2) 2023. 7. 1.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

출처: 부동산케이스노트 <https://realscasenote.com/>